

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<p>한국석유관리원 ■■■■■본부</p>	<p>o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(통보)</p> <p>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석유관리원”라 한다)는 석유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관리,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요령(이하 “관리요령”이라 한다)을 제정·운용하고 있음</p> <p>관리요령 제13조(차량운행일지)에 의해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,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, 익일 일과 개시와 동시에 차량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, 기관의 특성상 채취 시료의 업무용 차량 주유시 주유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</p> <p>그런데, 한국석유관리원 ■■■■■본부는 이번 감사시, ‘17.1월~6월까지의 차량일지를 점검한 결과, 차량운행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후 차량관리자에게 상신하지 않은 사례가 3건 있었고, 채취 시료의 업무용 차량의 연료 재사용과 관련하여 차량운행일지의 비고란에는 차량에 주입한 시료의 양을 “용량 X 사용캔수”로 표시하였지만, 주유항목에 주유량(Liter 기준) 기록을 누락한 사례가 2건이 있어 월간 주유량 집계가 잘못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함</p> <p>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</p> <p>차량 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자에게 상신하고, 차량관리자는 일지의 내용이 누락됨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,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</p>

기관명	지적내용 및 처분 요구사항
<p>한국석유관리원 ■■■■■본부</p>	<p>○ 무인경비시스템 기록관리·유지 미비 (개선요구)</p> <p>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이라 한다)은 본사 및 각 사업장의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과업수행을 위해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용역계약¹⁾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음</p> <p>용역의 범위는 무인경비,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로 되어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대상물의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, 관리원은 경비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</p> <p>하지만, 관리원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“용역계약특수조건”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매월 정기적인 점검·정비의 의무 조건만 규정하고,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순찰기록, 경비시스템의 정비 기록, 응급 출동 내역 등 관련 기록의 제출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, 관리원은 경비업체의 업무 수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</p> <p>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</p> <p>기관의 관련규정과 경비업체와 체결한 “용역계약특수조건”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순찰기록, 경비시스템의 정비 기록, 응급 출동 내역 등을 제출 받아 경비업체의 업무 수행 내용을 파악하여 철저한 보안·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</p>

1) 용역명 : 2017년도 한국석유관리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
 계약금액 : **,***,***원, 계약기간 : 2017.07.01 ~ 2018.06.30(12개월)
 과업장소 : 본사, 연구소 및 각 본부
 *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현황 : 총 **,***대(■■■■■본부 **대 포함)